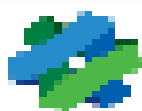


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

화장품 용기 역회수 기본계획[안](2021~2025)

2020. 12.



[사]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계획의 근거 및 역할	2
III. 추진목표	3
IV. 세부시행계획	3
<1> 적용대상	3
<2> 역회수 목표량 설정	4
<3> 역회수 방법	5
<4> 비용 징수 및 정산	8
<5> 역회수 참여 배제	10
<6> 역회수 실적 관리	11
<7> 홍보·교육 계획	12
<8> 전산시스템 구축	12
<9> 참여주체별 역할 분담	13
V. 향후계획	14

I. 추진배경

- 화장품 산업은 대표적인 이미지 산업으로 용기의 예술적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반면, 다양한 원료와 복잡한 구조의 용기 사용 불가피
 - (편의성) 야외 활동을 위해 휴대가 용이한 재질·구조 사용
 - (생산주기) 휴대가 용이한 1회성 제품 및 특수용도의 제품 수요 확대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적기생산방식 도입 확대
 - (복합기능화) 입술과 볼에 동시에 바를 수 있는 립앤지크 제품, 아이섀도우와 컨투어링 및 하이라이트를 함께 할 수 있는 다용도 제품 출시
- 전 세계적으로 창의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패키징을 통하여 메시지 전달 및 마케팅 효과 제고
 - (디자인) 내용물의 성분·휴대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질 사용,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화려한 색상과 차별화된 디자인 불가피
 - (다양한 소재) 고객 중심의 고기능성(고급화)을 위해 표면처리 기술 또는 후 가공기법 도입 등 용기의 소재 다양화 추세
 - (기능성) 공기 흡입 방지(진공 형태), 자외선 투과 방지(광차단), 에어리스 용기와 튜브, 펌프 등 다양한 기능성 용기 수요 확대
-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결과(재활용 어려움) 표시 의무제도* 시행('19.12.25) 이후, 의무생산자의 역할 확대를 통한 화장품 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
 - * 다국적기업의 경우, 동일한 용기에 대해 친환경포장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, 국내 업체는 “재활용 어려움” 등급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감성 자극 대신 거부반응을 불러올 수 있는 반 친환경적 이미지를 줄 수 있음
 - 국내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연구용역 추진('19.10~'20.7)
 - 동 연구결과에 따라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무생산자의 역할 확대 방향 및 세부전략을 담은 화장품용기 역회수 기본계획 마련

II. 계획의 근거 및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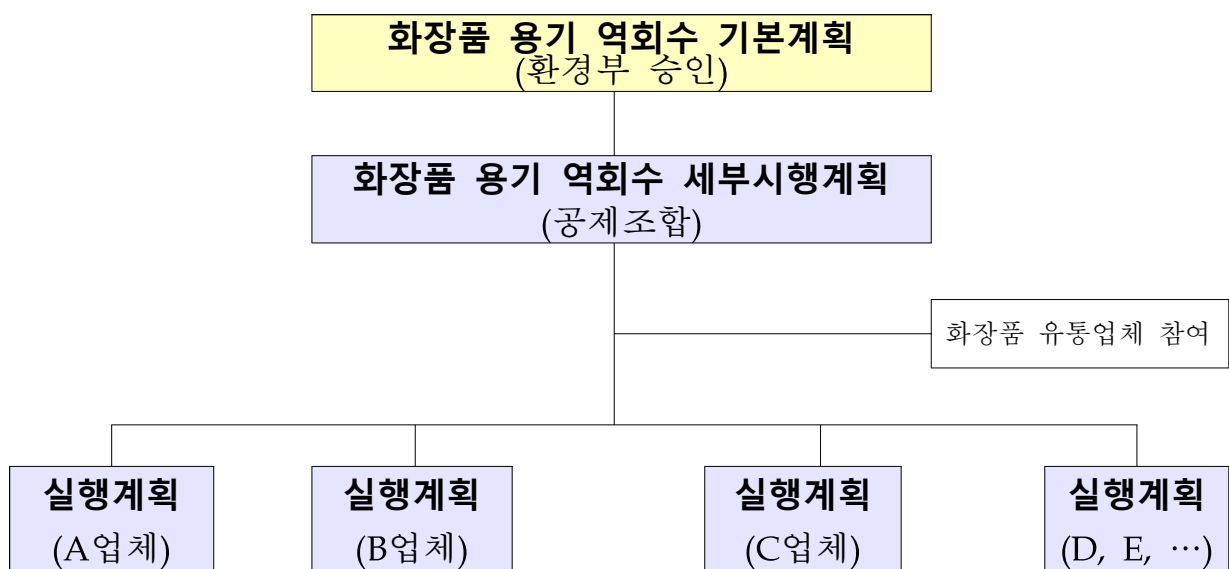
□ 계획 수립 근거

- (목적) 화장품 용기의 역회수에 관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 제시
- (법적근거) 「화장품 용기 회수촉진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 업무협약서」
('20.11.25)
 - (사)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(사)대한화장품협회 의견을 들어 본 협약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함
- (계획기간) 2021년 ~ 2025년(5년)

□ 계획의 위상과 역할

- (위상) 화장품 용기 역회수 관련 최상위 계획
- (역할)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화장품 제조·수입 의무생산자의 세부시행계획·실행계획에 대한 원칙 및 방향 제시

< 화장품 용기 역회수 기본계획과 관련 계획간 관계 >



III. 추진목표

□ 목표

- 목표연도('25년도) 기준 “재활용 어려움” 등급 포장재의 10% 이상 역회수 실시 * '19년 0.56% → '25년 10%
- 연도별 역회수 목표는 의무생산자 의견수렴을 거쳐, 환경부와 협의·결정

□ 전략

- 평가결과 표시면제를 통해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제고
-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화장품 용기의 역회수 체계 구축 및 재생 원료 사용 활성화 등 의무생산자의 역할 강화

IV. 세부시행계획

〈1〉 적용대상

- (참여대상) 「자원재활용법」 시행령 제18조제1호라목에 따라 **화장품을 제조·수입하는 의무생산자 중 역회수 참여 약정서 제출 의무생산자**
 - ('20년도 의무생산자) 364개사*(국내 제조 283개사, 수입 81개사)
* '19년 화장품 출고량 조사업체(7월) 및 업종조사(10월) 결과 '화장품' 업종 등록 업체
- (역회수 대상) 「화장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용기 중 **유리병, 페트병 또는 합성수지 재질 단일·복합재질 용기·트레이류**
 - 기존 회수·재활용체계 유지가 효율적인 필름·시트류, 금속캔 및 발포 합성수지류는 제외

□ (표시면제) 「화장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“재활용 어려움” 등급에 해당하는 **화장품 용기***

* 유리병, 페트병 또는 합성수지 재질 단일·복합재질 용기·트레이류

○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“화장품 용기 역회수 계획”에 참여하는 의무생산자에 한해 평가결과 표시면제

- 화장품 용기 역회수 미참여 의무생산자는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 제3항에 따라 “재활용 어려움” 등급 포장재 겉면에 평가결과를 표시
- 공제조합에서 “화장품 용기 역회수”에 참여하는 의무생산자 명단을 환경부(환경공단)에 송부, 평가결과 표시여부 단속 참고자료로 활용

〈2〉 역회수 목표량 설정

□ (기본방향) 목표연도(2025년) 역회수 목표를 제시하고, 매년 역회수 실적에 대해 성과·평가 실시 후 연도별 목표 설정

○ ‘21년도 목표량은 ‘19년도 역회수량(270.6톤), 역회수 제도 시행초기 등을 감안하여 “재활용 어려움” 등급 포장재 출고·수입량의 2%로 설정

○ 전년도 역회수 실적, “재활용 어려움” 등급 포장재 출고·수입량 등을 고려하여, 화장품업계와 협의 후 ‘22년 이후 역회수 목표율 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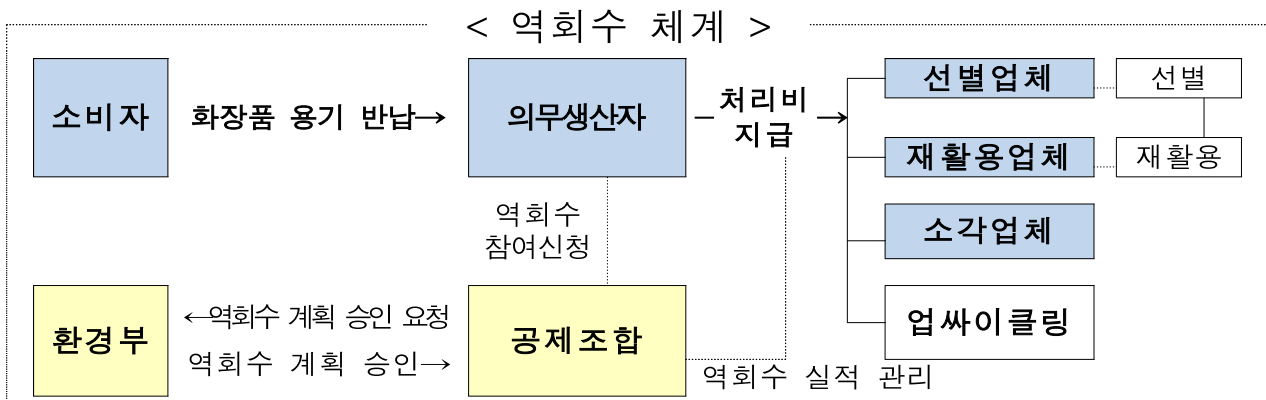
- 역회수 실적(1~9월), 화장품 판매 매장의 증감 등 역회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매년 12월까지 다음년도 목표율 결정

○ 화장품 역회수 가능 매장 감소 등으로 인해 역회수 목표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,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목표연도(2025년) 목표 조정

□ (의무생산자의 목표량) 포장재별 역회수 목표율 × 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·포장재 중 “재활용 어려움” 등급의 포장재 출고량

○ (출고량) “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·구조에 관한 정보” 중 “재활용 어려움” 등급의 포장재 출고·수입량을 의미

〈3〉 역회수 방법



□ 화장품 용기 역회수

○ (회수 대상)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유리병, 페트병, 단일·복합재질 용기·트레이류의 모든 화장품 용기

○ (회수방법) 타사 브랜드까지 포함하여 회수

○ (회수처) 브랜드숍, 편집숍, 대형마트, 백화점 등 화장품 유통 경로를 고려하여 의무생산자별 자체 실정에 맞게 화장품 용기 회수처 선정

- (의무생산자 자체 회수) 직영매장(브랜드숍, 편집숍 등) 또는 온라인을 통해 역회수*하되, 일부 역회수 의무량에 대해 유통업체에 위탁 가능

* 화장품 용기를 반납한 소비자 대상 인센티브 지급 여부, 지급 방법(포인트, 제품, 견본품 등) 등은 의무생산자 자체 실정에 맞게 결정

** 화장품을 제조·수입 또는 판매하는 의무생산자로서, 편집숍 운영 등 역회수 목표량 달성이 가능한 화장품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 자체회수만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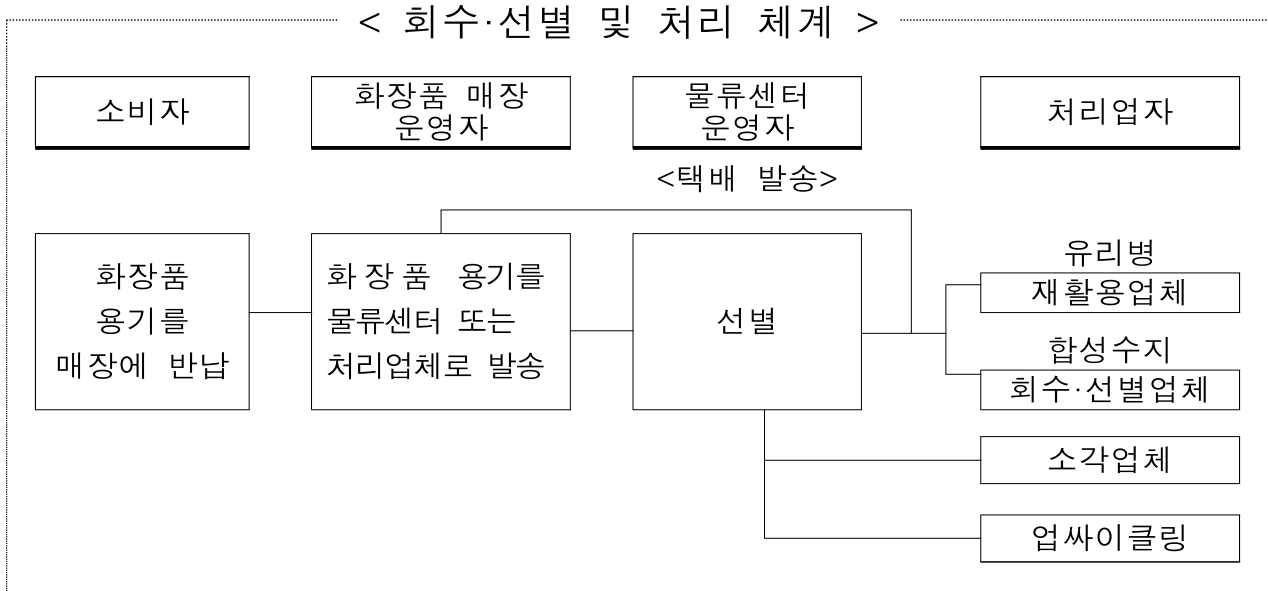
- (유통업체와 공동 회수) 직영 매장이 없는 의무생산자는 유통업체와 공동 역회수하되, 위탁비용을 유통업체에 지급

* 화장품 용기를 반납하는 소비자 등을 고려하여 참여 유통업체의 지속적 확대 추진

○ (회수실적) 유리병과 합성수지 용기로 구분하여 공제조합에 분기별로 역회수 추진실적을 제출

- 의무생산자가 자체 회수한 경우에는 의무생산자가, 유통업체가 회수한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제출

□ 역회수된 화장품 용기 처리



○ (처리방법) 화장품 용기 회수경로를 고려하여 의무생산자별 자체 실정에 맞게 결정하되, 의무생산자별 통합 처리 가능

- 화장품 매장에서 직접 위탁 처리시 타사 브랜드 매장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업체에 통합 위탁처리 가능

※ ○○백화점 내 A, B 브랜드 매장에서 화장품 용기 역회수 후, 회수·선별업체 D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, A, B매장에서 통합하여 택배 발송을 통해 운송비 절감 도모

- 화장품 매장에서 물류센터로 이송한 후 물류센터에서 선별*

* 유리병과 합성수지로 구분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와 재활용이 곤란하여 소각 처리해야 할 포장재로 구분

- 물류센터에서는 유리병과 합성수지 용기로 선별하여 위탁처리하거나 재활용이 곤란한 용기를 별도 선별하여 소각업체에 위탁처리
- 공병 화분, 줄넘기, 악세사리(반지, 팔찌, 목걸이 등) 등으로 업사이클링



- (처리비용) 화장품 매장에서 회수·선별업체까지 운반비용의 의무 생산자 부담 여부에 따라 2원화하여 재활용업체와 협의 후 계약 추진

< 기 본 방 향 >

- ◆ 화장품 용기의 대부분이 내용물이 잔존하고, 복잡한 재질·구조로 인해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위탁처리비 단가 산정
- ◆ 회수·선별 및 재활용 비용은 기 지급중인 EPR지원금으로 대체
- * (유리병) 32원/kg, (페트병) 22~27원/kg, (단일재질 용기) 20원/kg, (복합재질 용기) 137원/kg

- (운반비용 미부담) 유리병 153천원/톤, 합성수지 용기 246천원/톤
- (운반비용 부담) 유리병 133천원/톤, 합성수지 용기 216천원/톤

- (처리업체) 유통업체와 공동회수인 경우, 공제조합에서 선정, 의무생산자 자체회수인 경우, 의무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선정

- (공제조합) 화장품 용기 역회수 참여 유통업체와 협의 후 위탁처리 업체 선정

※ 화장품 제조·수입 의무생산자에 해당하고 화장품 용기 역회수에 참여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역회수 목표량에 해당되는 화장품 용기 처리비용 징수

- (의무생산자) 직영 매장 등을 통해 직접 역회수를 하는 경우, 의무생산자가 자체 실정에 맞게 처리업체를 선정·계약

<유리병 재활용업체 및 합성수지 회수·선별업체 현황>

(단위 : 개사)

구 분	합계	서울	인천	경기	강원	충청	호남	영남	제주
유리병	22	-	-	12	-	3	3	4	-
합성수지	158	15	11	53	7	23	18	29	2

□ 시행시기

- 유통업체와 공동 회수체계 구축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'21년도 상반기 중 시행하되,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유통업체와 협의 후 결정

<4> 비용 징수 및 정산

□ 특별계정 신설

- 공제조합에서는 역회수 비용 징수를 위한 특별계정을 신설하여 포장재 회수·재활용을 위한 분담금과 구분하여 관리
 - 유통업계에 지급할 비용과 재활용업계에 지급할 처리비용을 구분

□ (출고량 제출) 의무생산자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6항에 의한 “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·구조에 관한 정보”를 공제조합에 제출

- 의무생산자는 전년도 화장품 용기 출고·수입량을 공제조합으로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
 - “재활용 보통·우수·최우수” 등급을 포함한 모든 화장품 용기에 대해 출고·수입량을 제출
 - 의무생산자가 환경공단 및 공제조합에 제출한 자료를 비교·검증
- (제출 서식) 「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 별지 제3호서식

포장재 종 류	포장재 재질· 구조	상 품 명 (규격)	개당 포장재 무게	연간 출고량 (개)	제품/포장재 출고량(kg)	평가 등급	비 고

- 화장품 용기 역회수 신규 참여희망자는 참여약정서 제출 시 전년도 “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·구조에 관한 정보”를 공제조합에 제출

□ 비용 징수

- (징수 대상) 화장품 용기를 유통업체와 공동회수하는 의무생산자
- (시기) 매년 상반기 중 징수하되, 고지 시기, 방법, 납부 기한, 납부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제조합이 의무생산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별도 결정

○ 전년도 “재활용 어려움” 등급의 포장재 출고량으로 우선 고지한 후 익년도에 정산하되, 처리비용 중 100원 미만은 절사

○ '21년도 화장품 용기 역회수 단가

- (유통업체와 공동 회수) 화장품 용기 1개당 300원(소비자 대상 인센티브, 유통업체의 관리비용 등 포함, 유통업체와 협의후 최종 결정 예정)
- (회수된 용기 처리) 유리병 153천원/톤, 합성수지 용기 246천원/톤

○ 비용 산출 방법

- (유통업체 역회수 위탁비용) 역회수 목표율 × 의무생산자의 당해 연도 제품 · 포장재 중 “재활용 어려움” 등급의 포장재 출고량* × 용기 1개당 위탁단가
- * 유리병은 125g/개(8,000개/톤)으로, 합성수지 용기는 31g/개(32,258개/톤)로 산정
- (회수된 화장품 용기 처리비용) 역회수 목표율 × 의무생산자의 당해 연도 제품 · 포장재 중 “재활용 어려움” 등급의 포장재 출고량 × 포장재별 처리단가

□ 비용 지급

○ (역회수 위탁비용) 분기별 1회 지급

- 유통업체에서 화장품 용기 역회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받은 후 역회수한 화장품 용기 개수에 따라 지급

○ (처리비용) 공제조합이 계약한 경우 반기별 1회 지급, 의무생산자가 직접 계약한 경우,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의무생산자가 직접 지급

- 공제조합과 계약한 처리업자*로부터 위탁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**를 반기별로 제출받은 후 처리실적에 대해 비용 지급

* 유리병 : 재활용사업자, 합성수지 : 회수·선별업자

** 계량증명서 등 거래·납품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세금계산서 등

- 의무생산자(또는 유통업체)와 화장품 용기 처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비교·검토 등 검증 실시

□ 처리비용 정산

- 의무생산자가 제출한 “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·구조에 관한 정보”를 토대로 출고·수입량 차이에 따른 차액을 다음연도에 정산
 - 정산금액은 당해연도 처리비용 청구시 추가 또는 감액 청구
- 화장품 용기 역회수에 참여하는 유통업체의 역회수 실적이 목표량을 초과할 경우, 추가비용에 대해 출고·수입량에 비례하여 추가 징수
 - 역회수 실적이 목표량에 미달할 경우, 의무생산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화장품 용기 역회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
- 의무생산자가 화장품 용기를 직접 역회수한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

〈5〉 역회수 참여 해제

□ 해제 대상

- 역회수 참여 해제의사를 서면으로 공제조합에 통보한 의무생산자
- “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·구조에 관한 정보”를 허위로 제출하거나,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의무생산자
- 자체 회수 의무생산자 중 연간 역회수 실적이 미비하거나, 화장품 용기 공동 역회수 비용을 공제조합에 납부하지 않은 공동 역회수 의무생산자

□ 해제 방법

- 공제조합은 역회수 참여 해제 대상 의무생산자에게 역회수 참여 해제사실을 서면(등기우편)으로 통보하고 해제자 명단을 환경부에 제출

□ 재질·구조 평가결과 표시면제 효력 상실

- 의무생산자가 역회수 참여 해제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받은 날의 익월 1일부터 제조·수입되는 제품*은 재질·구조 평가결과 표시

* 국내 제조제품은 제조일을, 수입제품은 통관일을 기준으로 적용

<6> 역회수 실적 관리

□ 성과 평가

- 역회수 계획 최종년도(25년도)를 기준으로 목표 달성도* 등 성과평가 실시

* 역회수 참여 의무생산자가 역회수한 화장품 용기 총량을 “재활용 어려움” 등급 출고·수입량의 총량으로 나누어 계산

- 공제조합에서는 매년 7월말까지 전년도 화장품 용기 역회수 실적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, 미비점에 대한 개선·보완방안 마련

□ 이행상황 점검

- 공제조합에서 분기별 역회수 실적을 확인,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

- (유통업체와 공동 회수) 화장품 용기 역회수 참여 유통업체는 역회수 실적 및 증빙서류를 공제조합에 분기 익월 15일까지 제출
- (의무생산자 직접 회수) 화장품 용기의 처리업자로부터 증빙서류*를 제출받아 공제조합으로 송부

* 계량증명서 등 거래·납품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- 공병 화분, 줄넘기, 악세사리 등으로 업사이클링한 경우, 의무생산자가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조합으로 송부

- 화장품협회 주관으로 화장품 용기 역회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홍보방안 논의를 위해 “화장품 용기 역회수 활성화 협의체” 구성·운영

□ 개선방안 등 조치계획

- 공제조합 주관으로 역회수 실적 점검 실효성 제고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역회수 지원 위원회를 구성·운영

〈7〉 홍보 · 교육 계획

□ 화장품 매장, 홈페이지, SNS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 활용

- 보도자료 배포 및 화장품 매장에 역회수 관련 홍보물 게시·배포
- 중점 홍보사항, 우수 홍보영상 등을 의무생산자·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·SNS를 활용하여 공동 홍보(수시)
- 주요 환경 기념일*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·참여 유도를 위하여 사전 기획에 의한 종합적 홍보(화장품협회·의무생산자 협업) 추진
 - * 환경의 날(6.5), 자원순환의 날(9.6) 등
 - 기념식 외에 참여형 이벤트, 퀴즈 이벤트(온라인) 등 기획
 - 캠페인·정책방향 등 기념일을 전후하여 기획 방송·기사 추진
- 화장품 용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* 등 생생한 이야기를 웹툰, 환경동화 등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블로그에 게재 등 수요자 관점의 공감형 홍보
 - 단순히 정책내용(또는 성과)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, 실제 사례를 스토리로 구성하여 홍보함으로써 공감 제고 필요
 - * 공병 화분, 줄넘기, 악세사리(반지, 팔찌, 목걸이 등) 등

□ 화장품 판매매장 종사자 교육

- 화장품 용기 역회수 제도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*에 대해 사전 교육
 - * 인센티브 지급방법, 회수된 화장품 용기의 처리방법, 처리절차 및 실적관리 등

〈8〉 전산시스템 구축

□ 목적

- 의무생산자의 효율적인 자료 제출 및 화장품 용기 역회수에 관한 통계 관리 등을 위해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과 연계한 전산시스템 구축

□ 전산시스템 개발 개요

- (개발기간) '21. 1 ~ 6월(6개월)
- (소요예산) 180백만원 내외
- (주요내용) 의무생산자의 화장품 용기의 출고·수입 및 역회수 실적 제출, 처리비용 산출·부과, 각종 통계 조회 등

〈9〉 참여주체별 역할 분담

□ (공제조합) 역회수 관련 총괄 관리

- 역회수 추진계획 수립 및 환경부 협의, 화장품 용기 출고·수입 및 역회수 실적 관리, 소요비용 징수 및 정산, 성과분석 등
- 화장품 역회수 참여 희망 의무생산자 모집
- 유통업체 매장내 화장품 용기 회수함 설치·지원 등

□ (화장품협회) 역회수 제도 홍보 총괄

- 보도자료 배포 등 연도별 화장품 용기 역회수 홍보계획 수립
- “화장품 용기 역회수 활성화 협의체” 구성·운영계획 수립

□ (의무생산자) 역회수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홍보 및 화장품 용기 회수 등

- 화장품 판매 직영매장을 통해 역회수 제도 홍보 실시
- 화장품 판매 직영매장 종사자 대상 역회수 제도 교육 실시
- 소비자 대상 인센티브 지급 등 소요재원 부담 등

IV. 행정사항

□ 공제조합

- 화장품 용기 역회수 세부추진계획 수립·시행 : 전년도 12월
 - '21년도 세부추진계획은 '21.1월에 수립·시행
- 분기별 화장품 용기 역회수 실적 확인 : 분기 익월
- 화장품 용기 역회수 추진실적 제출(→환경부) : 다음 년도 7월말
- 화장품 용기 역회수 참여 해제자 명단 제출(→환경부)
 - 화장품 용기의 출고·수입량(재질·구조에 관한 정보)에 관한 정보 미제출 의무생산자 : 해당 년도 6월 15일
 - 역회수된 화장품 용기의 처리비용 체납 의무생산자 : 해당 년도 10월 15일

□ 의무생산자

- 화장품 용기 역회수 실행계획 제출(→공제조합) : 해당 년도 1월말
- 연간 화장품 용기 출고·수입 실적서 제출(→공제조합) : 다음 년도 4월 15일
- 화장품 용기 역회수 실적서 제출(→공제조합) : 분기 익월 15일